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5. 23 선고 2021가단1026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육오

담당변호사 김대수, 조주호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이덕욱

변 론 종 결 2024. 3. 21.

판 결 선 고 2024. 5. 23.

주 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8. 24. 접수 제494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① D은 2017. 5. 8.경 원고 A로부터 E에게 전달할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E에게 전달하지 않고 주식매수, 개인 생활비, 보험료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6.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524,86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D은 2019. 11.경부터 E이 정상적으로 선물상품에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원고 A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마치 D이 원고 A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실제로 E에게 전달하여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원고 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A로부터 2020. 4. 22.경 E에게 전달할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D은 2018. 9. 29.경 원고 B으로부터 E에게 전달할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E에게 전달하지 않고 주식매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10. 1.경 송금받은 원고 B의 투자금 50,000,000원, 2018. 10. 2.경 송금받은 원고 B의 투자금 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D은 2023. 9.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23고합59). 그 후 D 및 검사의 각 항소(부산고등법원 2023노427), D의 상고(대법원 2024도1926)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24.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원고들은 2020. 11. 13. D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합105086).

위 민사사건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2024. 1. 31. “D은 위 횡령, 사기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손해 305,600,000원, 원고 B이 입은 손해 62,25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D은 원고 A에게 305,600,000원, 원고 B에게 62,2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D은 2020. 8. 24.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9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9,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F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을

별지